

협회소식

WHO 산업보건국장 초청특별강연회 개최

당 협회는 WHO 산업보건국장인 M. A. EL BATAWI 박사를 초청, 특수건강진단기술 향상에 관한 심포지움을 10.15일 가톨릭의대 대학원 강당에서 노동부 한진희차관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학계 및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EL BATAWI 박사는 「산업보건의 최신 국제동향」에 대한 발표와 자신이 지난 1967년 최초 방문이후 10여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과정을 지켜 보았다고 전제하면서 금번 7년만에 방문을 하니 더더욱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여 큰 감명을 받았다고 피력, 특히 산업보건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이기 때문에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모델로 소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EL BATAWI 박사는 최근 산업보건분야에 있어서 주요 연구과제로는

- 생식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의 직업적 폭로에 대한 대책
- 직업병 이외의 직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기타 직업성 질환
- 신경중독학 분야
- 직장에서 일할때의 사회심리적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건강기준의 허용치 설정 등이라고 발표하고, 아울러 모든 근로자가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동 심포지움에서 고려의대 환경의학연구소 차철환박사는 특수건강진단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세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상황을 살펴보고 특수건강실시상의 문제점들과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금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EL BATAWI 박사의 강연요지와 차철환교수의 강연 요지는 다음호에 요약하여 게재할 계획이다.

● 정정 합니다 ●

지난호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중 27페이지 제 43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업무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을 (누락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